

초막골캠핑장 이용 자동 감면(동의) 신청서

신청인	(남/여)	연락처	
주소		생년월일	년 월 일
감면사항 (√표 하세요)	<input type="checkbox"/> 군포시 다자녀 (막내: 년생) (차량번호:)	<input type="checkbox"/> 군포시 장기기증	<input type="checkbox"/> 군포시 병역명문가
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장애(1~3급)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	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
○ 감면 근거: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(제 17조 사용료의 감경)
제17조(사용료의 감경)
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캠핑장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<개정 2019.7.9., 2023.12.12.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<개정 2019.7.9>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개정 2019.7.9>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
마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.18민주유공자<개정 2023.3.16.>

바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

사. 「군포시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<신설 2018.12.31.>

아.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(단, 단체형은 제외)<신설 2019.7.9.><개정 2023.3.16.>

자. 「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<신설 2020.5.11.>

※ 관련 증빙서류(최근 3개월 이내) 및 신분증 사본 제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
○ 이메일 접수: guccamping@gunpouc.or.kr [서류 심사 후 5일 이내 적용]

○ 문의: 031-390-7666

* 군포도시공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·보유·처리 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동의

년 월 일

감면(동의) 신청인:

(서명)